

2022

10

통권 470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지난 9월 23일 상담소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채 해결 및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32면)



상담소는 지난 9월 17일 '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법교육'의 일환으로 관악구청에서 열린 2022관악다문화 축제에 참여하여 많은 시민과 함께 '법교육 및 무료법률상담, 각종 게임활동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관련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 신뢰를 쌓는 지름길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별기고 | 제사주재자와 젠더
- 9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 14 •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④
- 16 • 가정폭력상담실
- 21 • 어떻게 할까요
- 25 • 좋은 책
작별하지 않는다
- 26 • 결혼과 인생(228) 영화 이야기
매그놀리아 _ 김용언
- 28 • 실습소감문
-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봉평 꽃꽃〉





21세기에 맞는 ‘가족’ 개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대로 된 법적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2005년 2월 3일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어 2월 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올해 창립 66주년의 해를 지내고 있는 상담소가 주도해온 가족법개정운동의 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현실과도 맞지 않고 법과 인권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억압과 모순된 관계로 묶어두었던 호주제를 마침내 역사 속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가족법개정운동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와 관습을 바로 잡고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제대로 권리를 찾고 복리를 누리도록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가족’과 ‘가정’을 생각합니다. ‘가족’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 일정 범위 그리고 형태와 유형 등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시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의 생활 공동체이며 사람이 처음 속하게 되는 사회집단입니다. 이 구성원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구성원 모두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한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짚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이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선언하며,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족과 국가가 모두 노력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또한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제2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의 ‘가족’이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건강가정’이라는 내용은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적절한 표현인가에 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는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가 47만여 가구에 달하고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위탁 가족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 개념이 이러하다 보니 이들은 실질적으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공유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 예로 실제 보호자임에도 병원 진료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곳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일 뿐 아니라 소득세 인적공제는 물론 건강보험, 가족수당 등 각종 보호와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4월 비혼 동거 커플,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노년의 동거 부부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5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 회했습니다. 이 같은 여성가족부의 입장 선회는 2020년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청 조사에 나타난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생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여성가족부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여론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단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법적인 근거 없이 현실적인 지원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형태 변화에 맞춰 적절한 가족 복지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법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상담소가 해온 가족법개정운동의 의미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동성동본 금혼 철폐,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던 당시 존치론자들은 이 규정들이 없어지면 가정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탄 날 것이며 가족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주제 같은 경우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폐지해야 하나 의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정리된 이러한 논쟁을 다시 짚어보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저 답답하고 난감할 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의 가정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삶을 제대로 보고 진정한 복지정책을 바르게 수립할 수 있는 정책부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가족부 존폐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가족문제를 다루는 상담소로서는 가족이 어디로 흘러갈까 걱정이 많습니다. 사회와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해도 모든 사람이 삶을 시작하고 영위하는 곳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주재자와 젠더*

배 인 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1. 추석연휴 기간 반가운 기사를 접했다.¹⁾ 기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8. 12. 어머니의 장지를 두고 장례식 도중 6남매가 다툰 사건에서 “장자가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관습은 변화된 가족제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서 “가족 중 장자(長子) 즉 장남, 장손이 아닌 자녀도 제사의 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것이다.

2. 대법원은 일찍이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²⁾에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

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였다.

3. 제사주재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경위는 이렇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구 민법은 제사상속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사상속을 도덕과 관습의 범주에 맡기면서도, 제996조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이하 ‘제사용 재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0. 1. 13. 법

* 이 글은 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젠더와 법(박영사, 2022)” 중 ‘가족법과 젠더’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2890>. 최종방문일 2022. 10. 4.

2) 위 판결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외에도 망인의 유체, 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를 제4199호로 개정된 구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제도를 채택하면서 위와 같이 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호주승계의 효력이 아닌 재산상속의 효력 중의 하나로 제1008조의3에 규정하고 그 승계권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현행 민법에서는 호주승계제도조차 폐지하고 제1008조의3은 그대로 유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제사주재자에 관한 종래의 관습 내지 판례법이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법의 일반원리와 아울러 제사용 재산의 성격,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의 입법 목적, 제사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리에 의해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³⁾

4.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듯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각종 법률 및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상속인들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종래의 관습은, 가족 구성원인 상속인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적서간에 차별을 두는 것이어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변화된 가족제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 역시 상당 부분 약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관습 내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러한 관습에 터잡은 종래의 대법원판결들 역시 더 이상 판례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제사주재자가 정해져야 한다.

5. 문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장남 등이 우선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되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함이 조리에 부합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남 등이 우선

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되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함으로써 장남 등과 다른 상속인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사정에 의해 초래된 것이고, 이러한 차별은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의 보존’과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법관 박시환, 전수안의 반대의견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남 등이 당연히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으로 할 경우 장남 등은 얼마든지 협의의 불성립을 유도할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차별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의 불성립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기 보다는 장남 등의 주관적 의사에 달려있는 협의 성립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수결의 방식에 따라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재산관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신분관계의 영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다수결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재산법적 일반론에 통용되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사주재자의 결정이 문제되는 다양한 사안에서 경우에 따라 정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만한 요소들이 제사주재자 판단 기준에서 전혀 배제될 수도 있어 서로 저촉될 수 있는 전통과 현대에 걸친 다양한 이념과 가치 및 현실 사이의 조화로운 실현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결론에 이를 염려가 있다는 대법관 김영란, 김지형의 반대의견에 동의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3의 입법 목적과 위 조항의 문언에 보다 충실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조리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구를 제사주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장남 등을 우선시하는 종래의 관습’ 혹은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보다 다수가 지지하는 공동상속인 유

3)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무' 등 다수의견이나 대법관 박시환 등의 반대의견이 제시한 하나의 사정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기보다는, 그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생전의 가족관계 및 생활양태, 종교, 생존 배우자의 부양관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 주재하여야 할 제사의 종류와 범위, 공동상속인들의 생활형편, 거주지, 상속재산 및 그 분할의 내용과 승계되는 제사용 재산의 경제적 가치 등의 객관적 요소와,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 혹은 유지, 생존 배우자 및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등의 주관적 요소를 동일한 평면에서 병렬적·포괄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민법 제1008조의3의 신설취지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⁴⁾

6. 현재 대법원에는 이혼을 거부하고 혼인계속을 주장하는 법률상 아내와 사이에 딸 2명을,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아들을 둔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자 중혼적 사실혼 처가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하여 법률상 아내 및 딸들과 상의 없이 장례를 주도하고 장지를 정하였고, 이에 법률상 아내와 딸들이 유해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8다248626 사건). 이 사건의 1심인 고양지원 2017가합1134호 사건이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493 사건에서는 위 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① 시체·유해도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른 제사용 재산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며, ②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이,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항소 역시 기각하였다.

하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용 재산 및 제사주재

자의 본질에 대한 고찰 없이, 막연히 “장남 내지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등한 조건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자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라면서 단순히 관습의 일부로 남아 있는 현상을 조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이를 근거로 삼은 잘못이 있다.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민법 또한 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여성에게도 종회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는 등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 및 법질서가 변화되었는바, 장남을 우선시하는 종래의 관습은 더 이상 현재의 관습과 사회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비록 위 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어 아들이, 장남이 우선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과거로 우리 시대를 회귀시켰지만 대법원에 계속 중인 대법원 2018다248626 사건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같은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다시 한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시를 들여다본다. “장자의 제사 승계 관습은 가족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차별을 두는 것이다. 가족은 관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복잡, 미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사안에서 그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 위와 같은 법원결정견해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사건을 관할한다는 법규정이 없다,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분쟁을 유발한다며 법적 안전성이 없다는 비판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논박은 전효숙,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 대법원(전)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22면 이하 참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I)

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술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먼저 발견된 화학적 물질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남용 물질들 중에서 그 해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어 왔습니다.

술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에틸알코올(에탄올)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약 3,000 종류의 알코올 중 에틸알코올만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술이며 이를 곡물 알코올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술 종류의 주요 성분인 에틸알코올은 곡식이나 과일, 합수탄소나 당분에 효모가 작용하여 발효된 화학적 산물입니다. 에틸알코올은 수술할 때 뇌를 잠들게 하여 마취시키는 약제인 에테르와 비슷한 효과를 갖습니다. 또 알코올은 심장박동이나 호흡과 같은 신체 기능도 억제시키는 중추신경억제제입니다.

술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맥주 종류는 낱알 곡식을 발효시킨 것으로 3.5%~6%의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아 물이 나쁜 지역에서 음료수 대용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나, 많이 마신다면 다른 술이나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과일을 발효시킨 와인 종류가 있는데 보통 12~14%의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발효로 생긴 알코올 자체가 효모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와인은 종류에 따라서 알코올을 따로 첨가하여 더 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주스나 설탕물 등을 첨가하여 알코올 도수를 낮춘 와인쿨러도 있습니다.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 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셋째, 증류주가 있는데 이는 발효주를 증류시킴으로써 수분을 제거하고 알코올 도수를 더 높인 것들입니다. 증류를 거듭할수록 도수가 더 높아져 30~60%에 이르며 여기에는 소주나 위스키, 브랜디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항상 술이 있을 정도로 음주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술이 식음료나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술은 기분전환을 위한 윤희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과음을 반복하게 되면 음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이 단지 식음료나 기호품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중독성 있는 약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알코올은 위장과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알코올의 흡수 속도는 신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가 비어 있으면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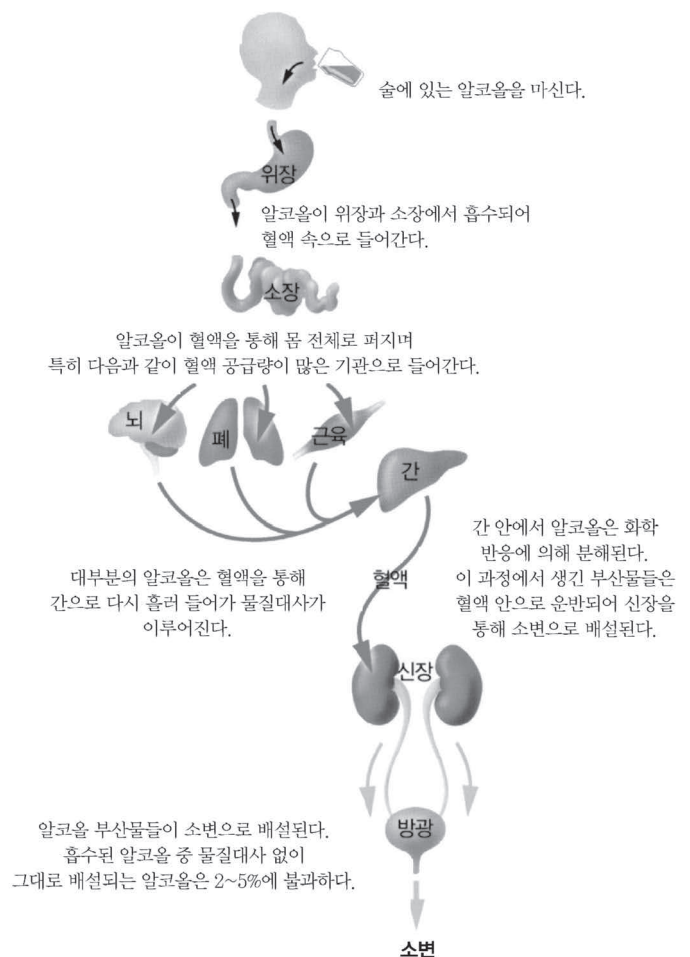
알코올 처리 속도는 마신 술의 양, 평소에 마시는 술의 양, 그리고 간의 건강상태에 좌우됩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1시간에 7~10g 정도의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이는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알코올은 간에 해로우며 간경화와 같은 간 질환이 있으면 알코올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간경화는 장기적인 알코올 남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물질대사가 이루어져 독성이 심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알코올에 의해 일어나는 신체 손상 중 일부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그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없는 물질인 아세트산(초산)으로 분해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다시 빠르게 분해되어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데 많은 양의 알코올이 섭취된 경우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축적되어 두통, 위염,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 즉 숙취(hangover)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간에서의 대사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들은 혈액 안으로 운반되어 신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되며, 몸 안에서 처리되지 않고 오줌이나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알코올의 양은 2~5%에 불과합니다. 호흡의 알코올 농도는 매우 낮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 우리의 몸은 알코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¹⁾



1) 출처 : 「알코올과 음주문제」(Dr Jonathan Chick 저, 남궁기 편역, 2005, 아카데미아)에서 발췌.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까요?

알코올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의 알코올을 섭취하여도 뇌의 일부기능이 저하되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긴장감을 낮추고 친근감을 느끼게 되어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공격적이고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알코올이 신체에 섭취되면 그로 인해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혈관확장, 약간의 혈압하강이 있을 수 있고, 식욕을 증대시킨다든지 위액분비를 자극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 알코올이 위장에 미치는 영향

- 음주를 하면 위액의 분비억제가 일어남과 함께 위와 작은창자의 벽이 헐게 됩니다. 자주 구토하거나 급성출혈성 위염이 생기고 피를 토할 수도 있습니다.
- 알코올은 위를 자극하여 염산이 많이 나오도록 하며 많아진 염산과 알코올이 위를 자극하여 결국 위궤양이 되는 것입니다.
-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식도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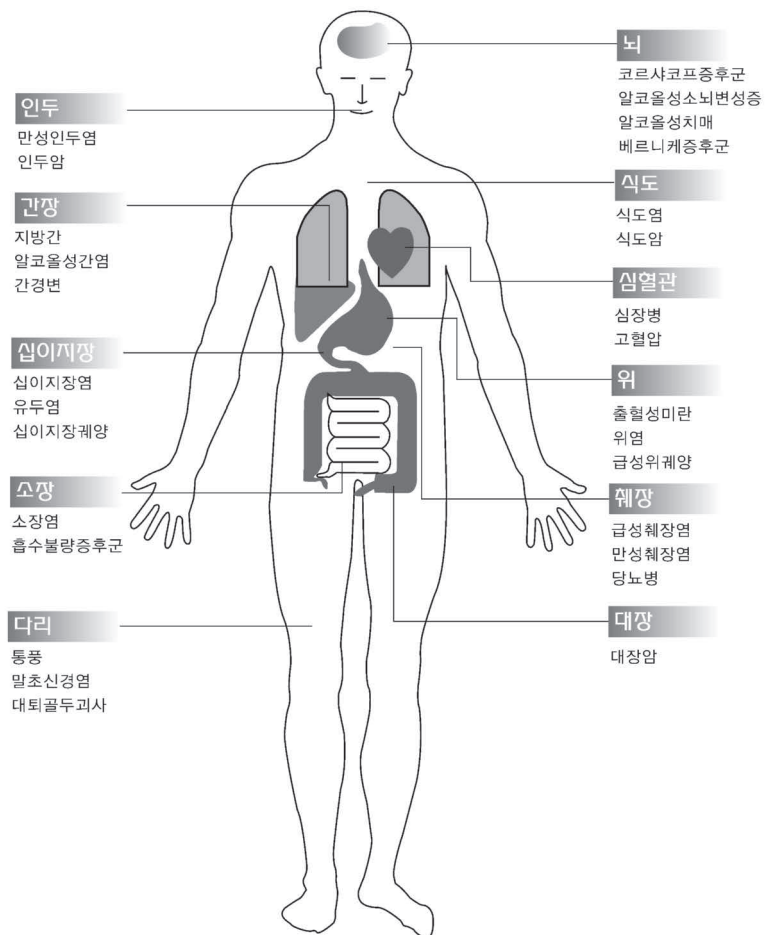
● 알코올이 간장에 미치는 영향

- 술이 악영향을 주는 신체 장기 중 대표적인 것은 인체의 해독공장인 간입니다. 간은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을 분해 해독하는 장기이기도 하지만, 간 자체도 알코올이나 알코올의 대사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간의 상태가 나빠지면 알코올을 대사,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조금만 술을 마

셔도 쉽게 취하게 됩니다.

- 간의 손상에는 지방간과 간경화가 대표적입니다. 소주로 환산하여 반 병 이상을 거의 매일 계속 마신 사람들 중 50% 가량이 5년 후에 지방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방간이 되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술을 마시게 되어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간을 치료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돌이나 나무처럼 파괴된 부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됩니다. 대개 매일 소주 반 병 이상을 10~20년간 계속 마시면 간경화가 발생한다고 하며 주량이 많을수록 간경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간경화는 지방간과는 달리 술을 끊어도 좋아지지 않으며 간의 재생능력도 상실됩니다.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혈중 알코올 농도²⁾에 따른 신체의 변화 〉

음주량	혈중 알코올 농도(%)	신체의 변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³⁾
1~2잔	0.03 ~ 0.04%	- 두드러진 변화는 없고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 - 피부가 빨갛게 됨 - 긴장이 완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3~5잔	0.05 ~ 0.07%	- 이완감 및 푸근함을 느낌 -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조금 늦음 - 민첩한 근육운동이 안 됨	
	0.08 ~ 0.09%	- 시각 및 청각의 저하 - 균형감, 언어기능의 저하 - 다행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커져 자제력 약화 - 운동조절능력의 저하 및 주의력 감퇴 - 체온상승, 맥박이 빨라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6~7잔	0.10 ~ 0.13%	- 신체균형을 잡기 어렵게 됨 - 상당히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자주 냄 - 정신적인 활동능력과 판단이 떨어짐	
	0.13 ~ 0.19%	-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서면 휘청거림 - 식별능력저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8~14잔	0.20%	- 운동조절능력이 상실되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등 정신활동의 혼란	
	0.30%	-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심신을 겨우 가늠 - 호흡이 빨라짐 - 메스꺼움을 느낌	
15~20잔	0.40%	- 똑바로 서지 못함 - 말할 때 갈피를 잡지 못함 - 의식이 없게 됨	
21잔 이상	0.50%	-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깊은 혼수상태 - 대소변을 무의식 중에 봄	
	0.60%	-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2)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100㎖당 알코올의 정도를 퍼센트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혈액 100㎖당 0.1g의 알코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알코올이 심장과 혈관에 미치는 영향

- 술을 많이 마시면 심장근육에 장애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작용에 의해 심장이 빨리 뛰게 됨으로써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알코올의 소모량이 많은 사람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질환의 발생률 또한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과음하는 사람의 경우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발생률이 2~4배나 높습니다.

● 알코올이 혈액에 미치는 영향

- 알코올은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여 빈혈을 일으킵니다. 또한 백혈구가 적어지면서 체내에 침입하는 병원체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 오랫동안 술을 마신 사람의 경우 혈액응고가 지연되거나 잘 안되기도 합니다.

● 알코올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나 알코올중독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항체생산이나 면역 반응이 약하고 박테리아 감염, 암에 대한 면역도 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태아의 면역저항을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알코올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 술은 흔히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서 사랑의 행위에 없

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 100cc당 알코올의 양이 100mg 이하에서 성욕은 증가하지만 발기력은 오히려 감소하며 발기를 지속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능력 또한 감소됩니다.

- 술을 계속해서 몇 년이고 마시면 고환이 위축되어 작아지고 정자수도 감소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 없어지고 난소의 크기가 감소하며, 항체가 없어지고 불임 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적정음주 수준은?

적정음주(Moderate Drinking)란 일반적으로 음주자나 주변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음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남자 2잔, 여자 1잔 정도의 음주는 관상동맥질환을 20~40%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당한 양의 술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혈압을 내리고, 혈전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마실 수 있는 적정음주량은 남자는 1일 3~4잔, 여자는 1~2잔 정도이며 일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14잔, 여자는 7잔 이내가 적정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잔은 각 술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잔(표준잔)을 말합니다. 표준잔 1잔에 포함된 순수 알코올 양은 13~15g으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소주 1잔과 맥주 1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비슷합니다.

매일 2잔 마시는 것보다 한 번에 7잔을 마시는 것, 즉 폭음이 더 위험합니다. 적정음주량으로 음주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시행일 : 2022. 7. 12] 제148조의2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전 소장 영면 (2)

1998년 12월 1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 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은 상담소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상담소의 창설 이념은 곧 창설자인 이태영 소장의 평생 신념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자신의 특출한 재능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의 억압받는 모든 이를 위해 바쳐온 이태영 소장의 일생이 집약된 곳이 바로 상담소인 것이다.



▲ 상담소 앞을 지나는 운구 1

상담소 건물 여성백인회관의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이태영 소장의 피와 땀과 평생의 수고가 서려 있었다.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로 출발한 상담소는 이 땅에 최초로 탄생한 법률구조기관이었다. 1966년 8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꾼 상담소는 여성의 권익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같은 해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되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이태영 소장이 여성으로선 최초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을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태영 합격자가 야당 인사인 정일형 박사의 아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 땅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하늘의 배려였던 것이다. 결국 이태영 소장은 변호사가 되어, 이웃을 위한 본격적인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성법률상담소를 세운 이태영 소장은 그 후 40여 년간 당신의 인생을 상담소에 바쳤다.

1998년 12월 17일 상담소는 창설자 이태영 소장을 영원히 떠나보내고, 그 높고 고귀한 뜻을 이어 이 땅에 법을 통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태영 소장의 높고 귀한 뜻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담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설자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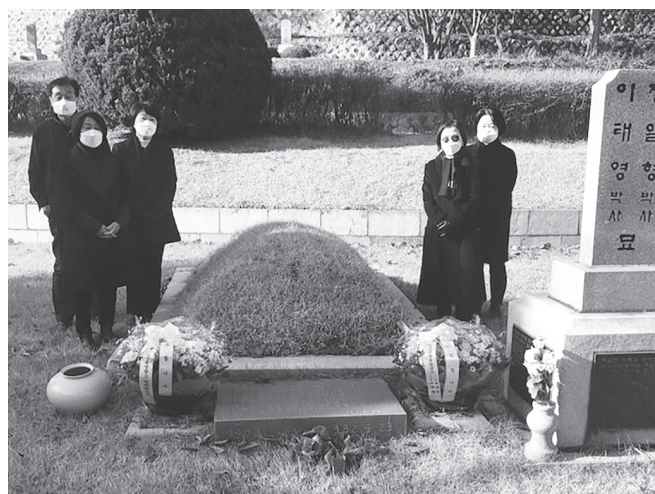
▲ 이화여대 김영의홀에서 열린 영결식



▲ 상담소 앞을 지나는 운구 2



▲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안치된 이태영 선생님



▲ 매년 이태영 선생님 기일에 헌화하는 상담소 직원들



대화법 교육과 집단상담 통해
결혼생활 내내 이어진 폭력적 대화 반성하고,
가사분담 위해 노력하여 부부관계 개선

2020버1***특수협박,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5회,
교육강좌(비대면 진행) 2회
등 14회

상담기간

2020. 9. 18. ~ 2021. 3. 1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2(아내)와 결혼한 지 17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 1남(17세, 14세:피해자1)이 있다. 2020. 4. 사
건당일 행위자는 누나로부터 받은 세탁기를 피해자2가 방
치하였다고 피해자1에게 험담하였는데 이를 피해자2에게
고자질한 것에 화가 나서 책상 의자를 들고 욕을 하며 피해
자1을 협박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2를 밀치고 팔에 머
리를 끼워 헤드록을 한 뒤 던져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수차
폭행하여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및 미골 골절,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여 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
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개별상담 시 대화법 교육영상을 시청하면서 부
부가 일상에서 반복해온 폭력적 대화와 결혼이라는 공동

생활체에서 자신이 가사를 전혀 분담하지 않은 점을 반성
하였다. 그리고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살 거라면 이대로
는 안되지 않겠는가”라고 피해자2와 대화한 결과 피해자2
도 같은 의견이었다. 오래전부터 부부가 각방을 쓴 것도 문
제라는 점에 상호 공감, 한방을 쓰기로 합의하고 이행하였
다. 또한 행위자는 비폭력대화과 가사 분담을 실천하였다.
행위자는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집단상
담에서도 진행자 및 집단성원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중간 점검 결과,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이해력이 높아
졌으며 교육 내용을 피해자2와 공유하고 실천하면서 피해
자2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자신이
많이 너그러워졌고 피해자2를 배려하게 되었으며, 피해자2
역시 행위자에게 너그러워졌고 배려한다고 인정하였다. 이
러한 과정은 아들인 피해자1과의 관계에서도 같아 피해자1
과도 화해하였다.

피해자2에게 4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
지 않았다. 행위자에 의하면 상담 초기에는 피해자2가 답을
보내지 않은 것이고, 후기에는 다리를 다쳐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담 종결 시 점검 결과,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고, 행위
자는 상담을 통한 변화로 피해자2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진
것 그리고 피해자2의 행위자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진 것을
꼽았다. 중간 점검 및 종결평가 시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부
부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 현재는 8점으로 부부관
계가 개선되었다.

2020버1*폭행
2020버1*** 폭행,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2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4회 등 21회

상담기간

2020. 10. 5. ~ 2021. 4. 4.

상담경과

부부는 2년 전 산악회에서 만나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이다.

아내는 2020년 4월 사건당일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툼 중 오른손으로 남편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고, 남편은 같은 날 아내의 가게에서 같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
는 아내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플라스틱 선반, 시가 5천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
괴를 하였다. 또 이에 대항하여 아내는 남편의 목살을 잡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러한 상호폭력으로 부부는 각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결정받았다.

남편은 갈등요인으로 아내가 쉽게 감정조절이 되지 않고
눈이 뒤집힐 정도로 격분하며, 자신이 하는 가게에 여자 손
님만 찾아오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고 동네가 떠내려갈 정
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을 꼽았다. 주변에 민폐가 되어 가게를 이전하여 영업하고
있는데 아내의 행동은 계속 반복되었다고 한다. 남편에 의
하면 아내는 극과 극의 감정이 교차하며 조금만 자극을 받
으면 좋은 감정상태에 있다가도 돌변해서 격분하고 이성
을 잃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갈

등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아내와 헤어지려고 마
음먹었으나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얽히게
되면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내는 코로나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이 없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밤늦게 들어오게 되고 주말
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던 구체적 사정을 자존심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였는데, 남편은 자신이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상담 도
중 쉽게 감정변화를 보이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말에 대
해서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
이 맞다고 강하게 어필하였다.

상담 중 합의한 바는 1. 부부 모두 일체의 폭력적인 행동
을 자제하기 2. 아내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
기 3. 아내는 용무가 있을 때만 가게에 찾아가기 등이다. 그
러나 다시 갈등이 촉발하였고, 남편이 집을 나와 지내게 되
면서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만, 공동명의로 해둔 집의 청산문제가 남게 되어 비폭력적
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두
사람 모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현재 생활을 편하게 받아
들였고, 상담 종결 이후 폭력을 재발하지 않기로 다짐하였
다.

**2020버196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4회,
집단상담 2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교육강좌 2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4회,
부부상담 7회 등 22회

상담기간

2020. 8. 3. ~ 2021. 4. 1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9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 1녀(38세, 30세, 34세)가 있다. 피해자는 본 건 이전에도 행위자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하였는데 행위자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위자는 2019년 12월 사건당일 피해자로부터 반찬을 먹은 것에 대해 추궁당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폭행하여 6개월간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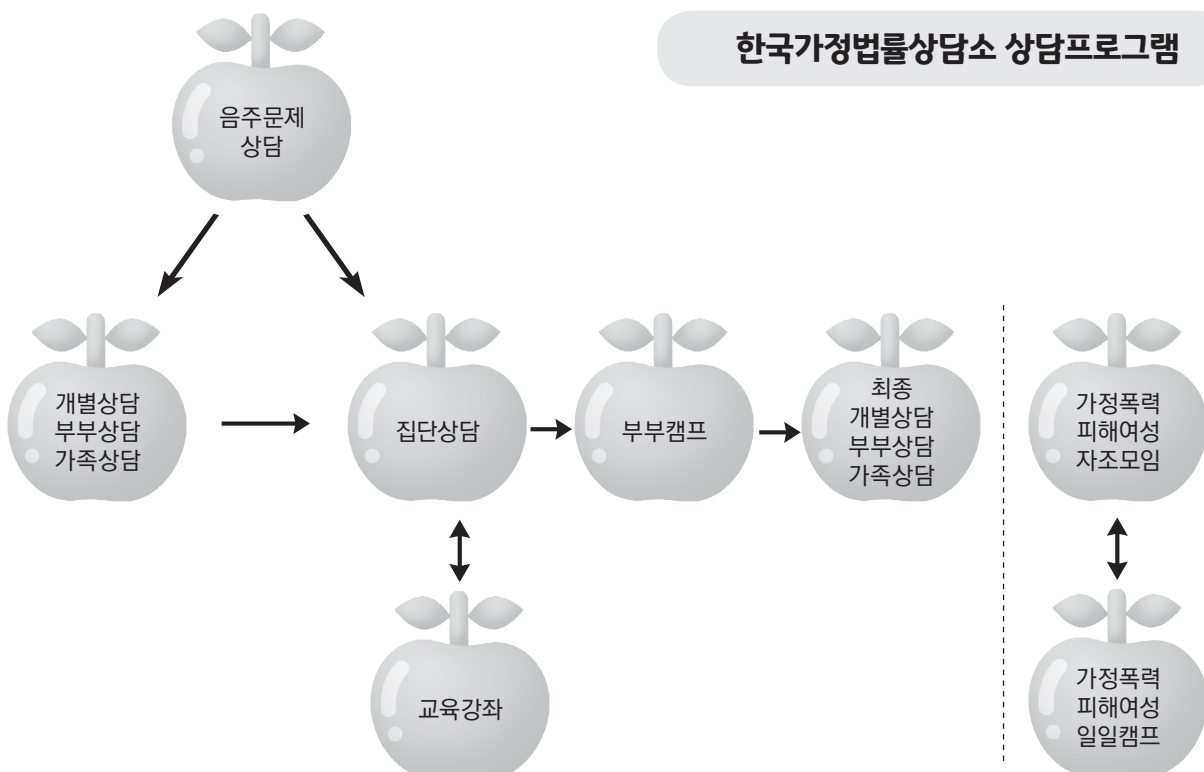
피해자는 갈등 원인으로 1) 행위자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하여 대화가 되지 않으며, 2) 행위자가 퇴직 후 일하지 않고 국민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3) 행위자가 부정적인 말, 비난, 욕설을 하

는 점 등을 꼽고, 행위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큰아들과 딸에게 무시하는 행동이나 폭언하지 않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갈등원인으로 1) 피해자가 결혼생활 중 아침밥을 해준 적이 없는 등 가사에 관심이 없고, 2) 가치나 판단 기준이 다른 점 등을 꼽았지만, 이제는 피해자에게 바라는 바가 없으며,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살기를 바랐다.

피해자는 2년 전부터 큰아들 집에서(아들 내외가 별거) 살림을 돌보며 거주하고 일이 있을 때만 행위자가 거주하는 집에 왕래하였는데, 2020년 12월 말경 아들 집에서 돌아와 부부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피해자는 아들이 성인으로 어머니와 둘이 지내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에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다가 함께 살게 되니 좋은 점도 있으나 갈등이 재현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행위자는 1)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 공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프로그램



격하지 않기 2) 피해자가 명문여고에 능력으로 입학한 것을 의심하는 말 하지 않기 3) 폭언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쓸모없는 짐을 버리기로 하였다. 부부는 합의 사항을 다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전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3점, 현재는 5점으로 평가하고 2점 상승 요인을 폭력을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향후 보완할 점으로는 행위자가 비난과 욕설을 하지 않기를 꼽았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점, 현재는 5점으로 평가하고, 10점 상승요인을 피해자가 폭언을 자제한 점을 꼽았다. 그리고 향후 피해자에게 바라는 점으로 집 정리를 들었는데, 피해자는 추석때까지 집 정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부부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음식을 해주는 등 부부관계가 이전보다 안정되었다. 다만, 행위자는 자신의 기준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남아 있고, 피해자 역시 행위자의 잘못을 반복 거론하는 태도가 남아 있어 향후 노력과 개선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1537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4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교육강좌 2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들) 개별상담 2회,
아내 개별상담 2회,
부부상담 1회 등 21회

상담기간

2020. 10. 20. ~ 2021. 4. 27.

상담경과

행위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온 피해자(아들, 30세)가 취업이나 아무런 사회적 소통을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차, 2020년 5월 사건당일에 피해자와 취직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6개월간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행위자의 배우자(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하면, 아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였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친정 어머니)가 올라와서 아들을 돌보았다. 피해자는 취학 전부터 산만하여 병원에서 검사 후 1년 가까이 상담을 받았으며, 중학교 때와 대학 재학 중에도 수개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는 어머니에게는 단답형으로 한 두 마디 하는 정도이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화를 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다. 피해자는 주로 쇼핑센터, 대형서점 등을 돌아다니고 그 외에는 현실적인 관계가 전혀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보내는데 사건 이후에는 집 옆의 원룸에서 생활한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가진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놓친 부분에 대하여 인식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가가기로 하였으며,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추천해달라고 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편입에 실패한 경험, 군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대학 졸업 후에도 정보가 부족해 진로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현재는 사회적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취업해야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도전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본소에서의 상담 후 병원에 가서 심리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치료를 받고, 현재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기회가 되는대로 개인 트레이닝을 받기로 상담자와 약속하였다.

행위자와 배우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였고,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피해자와 충돌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및 상담 종결 시 모두 피해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0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무언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행위자가 ‘왜 아들이 자신의 앞날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답답한지 모르겠다.’던 태도에서 벗어나 ‘내가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냥 지켜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점을 상담의 성과라 할 수 있다.

**2020버1745 폭행 /
2020버1746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3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교육강좌 1회(비대면 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교육강좌 2회(비대면 진행),
자조모임 1회(비대면 진행)
부부상담 4회 등 20회

상담기간

2020. 11. 5. ~ 2021. 4. 27.

상담경과

부부는 5년 전부터 사실혼으로 지내고 있으며 부부 사이

에 자녀는 없다. 부부 모두 재혼이다. 2020년 6월 사건당일 부부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문제로 시비하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가슴과 허리부위를 수회 긁는 등 폭행을 하였고, 남편은 아내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부부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남편은 2018년 2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로 깨어난 후 스텐트 시술을 하여 일을 할 수 없고, 아내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15년째 복용 중이다. 남편이 2020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부부는 그 수급비로 생활하는데 빠듯한 경제 사정이 부부의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부부는 사건 이후 화해하였고,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로 남편은 아내와 다투지 않고 대화를 잘하고 싶다고 하였고, 아내도 부부간에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내왔기에 대화를 잘하고 싶으며 남편이 자신이 하는 말에 공감하고,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수립한 상담 계획에 따라 비폭력대화법 이해 - 실천과제 부과 - 실천과제 점검 과정을 통하여 부부는 비폭력대화법을 실천하였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대화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종결상담 시 남편은 사건 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8점, 현재는 8점으로 평가하였다. 남편은 사건 당시에도 평상시 부부관계는 나쁘지 않았는데 갈등이 촉발한 그 순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감정조절에 유념할 것을 다짐하였다. 아내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5점, 현재는 8.5점으로 평가하고 남편의 이해도가 높아진 점을 평가하였다. 아내가 꼽은 남편의 변화요인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남편의 건강 상황, 법적제재 경험 등이였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에 현재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것과 감정 잘 다스리기를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10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Q 문 29 | 남편은 사소한 언쟁에도 자주 손찌검을 합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데 남편의 욕설과 폭행은 시부모가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한다는 식으로 남편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을 시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할 뿐 저에게는 무조건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과 시부모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곧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격을 모욕하는 상스런 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Q 문 30 | 남편은 원래 말이 거칠어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욕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 앞이나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저에게 항상 폭언을 합니다. 또한 저에 대한 폭언은 아이들에 대한 폭언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오히려 욕설만 더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A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이나 기물파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언어폭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 경미한 폭력일지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31 | 남편은 평소 얌전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아이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집니다. 저를 밀치거나 뺨을 몇 차례 때린 일도 있는데 진단서를 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물파손을 하는데 어제도 다림질을 해놓지 않았다고 셔츠를 찢어 버리

고 아침밥을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통을 부숴 버렸습니다. 남편은 두 번 다시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하였으나 그때 뿐입니다. 저보고 자신이 화낼 때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가슴부터 떨리고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A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의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남편으로부터 진단서를 땔 정도의 심한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시로 가벼운 구타가 반복되어 왔고 남편의 기물파손과 공포 분위기 조성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온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남편처럼 자신의 분노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해는 이혼사유가 된다

Q 문 32 | 남편은 평소에 저를 자주 구타했는데 일주일 전에는 제게 유리 재떨이를 던져 머리를 열일곱 바늘이나 꿰매게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되도록 얼굴이나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매를 자주 맞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무섭고 더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

는지요?

A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민법 제840조 제3호) 형법상 상해죄의 처벌 대상도 됩니다(형법 제257조).

● 시어머니가 부부생활을 방해할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Q 문 33 | 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곤 했습니다. 어쩌다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는 동안에는 살림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며 쉬지 않고 야단을 치십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 보았으나 듣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A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민법 제840조 제3호)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있고 그로 인해 배우자와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Q 문 34 | 장인, 장모와 아내가 저에게 항상 무시하는 언사를 하고 폭언까지 일삼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돈을 잘 벌고 여유 있게



사는데 저는 무능하다면서 차라리 이혼하라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아내도 처음과는 달리 마음이 변했는지 이제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처가와 아내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나요?

Q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Q 문 35 | 저는 혼인 당시 친정에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주고 시어머니에게 예단으로 거액을 드리는 등 무리하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친정아버지에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더니 말리는 친정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때리자 남편 또한 친정아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배우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을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4호).

비슷한 사례로 처가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타해 오다 장인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36 | 4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 한 번 오지 않았고 행방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연락할 수 있는 곳을 모두 알아보았으나 행적조차도 감감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이혼하고 새출발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동법 제840조 제2호)에 의한 경우가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른다면, 민법 제840조 제5호는 생사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보통실종)이거나 또는 전쟁·항공기 추락 등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특별실종)인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는 다른 것입니다.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발생하고 혼인이 해소되나 생사불명자가 돌아온다면 실종선고 취소 등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동법 제27조 내지 제29조). 이와는 다르게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이혼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생사불명이었던 배우자가 돌아와도 이전의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40대 공무원으로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느긋하고 말이 많지 않은 데 비해 아내는 급한 성격에 잔소리가 많아서 이러한 성격 차이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주중에 도맡아 하고 있으니 제가 힘들어도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성향과 욕구가 다르다 보니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외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아내가 빨리 서두르라고 짜증 내면서 말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이 있었는데 저와 아내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폭언과 폭력을 하면서 싸우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폭력의 중단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격 차이를 잘 받아들이고 부부가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A 두 분이 이번 일을 계기로 폭언과 폭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을 깊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복적인 다툼이 나오는 다른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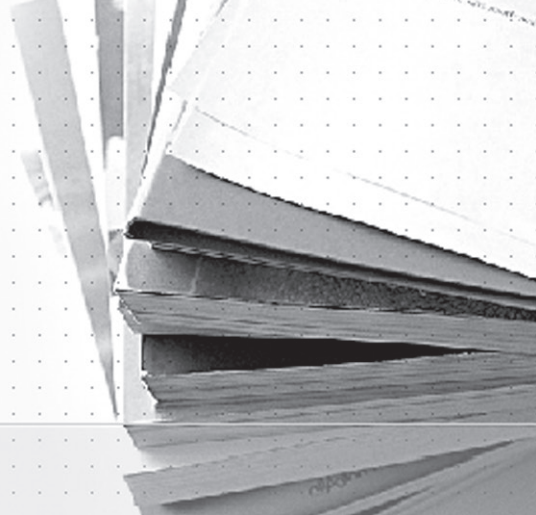
두 분의 폭력사건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됨에 따라 상담위탁 결정을 받게 되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위탁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의 목적은 두 분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성행을 교정하여 폭력이 재발되

지 않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상담가 등에 의해 개별상담 및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음주문제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등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하여 원가족관계, 결혼생활, 갈등이 반복되는 요인 등을 진단함과 동시에 두 분이 상담을 통해 변화되고 싶은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부부간 감정교류의 미숙함이 대화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반복되는 다툼이 어떤 상호작용에 기인하는지,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폭력상황으로 가게 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MBTI 성격유형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부부가 선호하는 반응, 관심, 동기, 기술, 흥미 등의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TCI 기질 및 성격검사지를 활용하여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으로 얻어진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변화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폭력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과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의 비판하고 지적하는 문제중심적인 사고를 해결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두 분이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할 때 “내가 당신과 달라서 도대체 문제가 뭔데?”라는 문제중심적 대화에서 “내가 당신과 다르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해결중심 대화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차연실 상담위원



“언젠가부터 그의 새 소설 앞에서는 숙연한 마음이 된다. 누구나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작가들도 물론 그렇다. 그러나 한강은 매번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한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말이다. 이 말에 그저 동의하며 이러한 작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행이라 생각한다.

책의 1부 ‘새’에서 주인공 경하는 악몽을 꾸고, 목공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한 친구 인선의 부탁을 받아 그녀의 새를 돌보기 위해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로 향한다.

“눈은 거의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떤 사실들은 무섭도록 분명해진다.” (44~45쪽)

2부 ‘밤’, 3부 ‘불꽃’에서 경하는 마침내 인선의 집에 도착한다. 거기에서 경하가 마주하는 것은 칠십 년 전 제주를 피로 물들인 민간인 학살과 거기에 얹힌 인선의 가족사다. 인선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잃고 십오 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평생을 이부자리 밑에 녹슨 칼을 넣고 잠자리에 들었던 인선의 어머니는 부모와 동생을 한낱한시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채로 언니와 둘이 남겨져 그 시간을 살아내며 제주에서 경산까지 오빠의 행적을 찾는 일에 수십 년을 바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즉 이렇게 작별하지 않았다.

그저 몇 줄로 정리되는 인선 부모의 삶, 그 갈피 갈피를 적시는 피눈물을 생각한다. 죽은 이의 얼굴에는 눈이 쌓여도 녹지 않는다고 했다. 우연

히 살아남은 열 살 남짓 자매는 얼굴에 눈이 덮여도 녹지 않은 시신들을 하나씩 뒤집어가며 총상을 입고 피에 젖어 그때까지 겨우 살아있던 여덟 살 막내를 찾아낸다. 그리고 당숙네로 와서 밤을 지새우며 바로 곁에 누워 열 살 언니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 동생에게 먹인다. “동생이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았는데 숨을 못 쉴 만큼 행복했다.” (251쪽)

이 작품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고 작가의 말에서 이야기했던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것도 종결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애도든 끝어안고 계속 나아가겠다는 결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밝히고 있다.

열아홉 살이었던 인선의 아버지, 열두 살부터 젖먹이까지 여동생 셋, 남동생 하나. 의심받을 나이의 남자여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아들만을 피신시켰고, 그리하여 그 아들은 부모와 동생 넷을 모두 잃고 자신은 십오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의 죄목은 무엇이였을까. 이야기가 한 글자 뺄 것도 더 할 것도 없이 아름답고 절절하게 다가와서 새삼스럽게 ‘작가’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광주를 다룬 전작 『소년이 온다』에 이어 역사를 대하는 작가의 진정성으로 공들여 채워진 작품이다.

이런 역사를 용서해서도 잊어서도 안 된다. 이런 역사를 만든 자들을 아직도 변호하거나 더욱이 영웅시하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부끄럽고 처참하다.

4.3 그리고 5.18과 ‘작별하지 않는다’

이숙현 편집부장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장편소설

문학동네, 2021



매그놀리아

감독 폴 토머스 앤더슨

출연 톰 크루즈, 필립 세이무어 호프먼, 줄리언 무어, 제이슨 로바즈, 필립 베이커 홀



거물 프로듀서 얼(제이슨 로바즈 분)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다. 그는 간병인 필(필립 세이무어 호프먼 분)에게 오래 전 헤어진 아들 잭(톰 크루즈 분)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아들은 지금 프랭크라는 이름의 '여성 공략법'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얼의 돈을 보고 결혼했던 두 번째 부인 린다(줄리언 무어 분)는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부정한 과거 때문에 혼란스러운 죄책감에 빠진다. 얼의 프로덕션에서 30년 동안 제작했던 유명 퀴즈 쇼의 진행자 지미(필립 베이커 홀 분) 역시 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마약중독자인 딸 클로디아(멜로라 월터스 분)에게 용서받지 못한다. 소음 신고 때문에 클로디아의 집에 출동한 경찰 짐(존 C. 라

일리 분)은 클로디아에게 첫눈에 반한다. 퀴즈 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린이 출연자 스탠리(제러미 블랙먼 분)는 아버지의 승부욕에 휘둘리고, 이 쇼의 초창기 퀴즈왕 출신인 도니(윌리엄 H. 메이시 분)는 사람들의 빈축을 사는 무력한 샐러리맨으로 살고 있다.

〈매그놀리아〉는 LA 산 페르난도 밸리 지역에서의 어느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다. 'what do kids know?(애들이 뭘 알아?)'라는 제목의 유명 퀴즈 쇼를 둘러싼 여러 인물의 얽히고설킨 애증이 우연과 필연의 교차로에서 마주치고, 그 갈등의 대단원은 무수한 개구리 떼가 비처럼 쏟아진다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장엄한 오페라처럼 연출된다. 이토록 격렬한 감정의 파고를 불러오는 원인은 다름 아닌 가족 사이의 갈등, 좀더 범위를 좁히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다. 이토록 작은 단위의 혈연에서 생성된 묵은 분노와 거리감이, 출애굽기 8장 2절이 예고했던 무시무시한 재앙("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을 불러온다. 〈매그놀리아〉가 전하는 메시지는 선명하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도 과거는 우리를 기억한다."

거인 폭군처럼 영원히 군림할 것만 같던 아버지들이 늙어서 초라하게 죽어가고,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끌어안고 성장한 아이들은, 내면 한구석이 크게 망가져 있다는 걸 어렵פות이 알고 있다. 자신의 남성다움

에 취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폭군에게 냉담하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사물 취급당했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들의 잘못이 더 극대화된 태도를 자신의 갑옷처럼 몸에 두르고 세상과 대결하려 한다. 이를테면 프랭크는 ‘여성을 짐승처럼 길들여서 위대한 남자를 존경하게끔 만들어라’라며 남성 우위의 세계관을 설파하는 기괴한 자기계발 강사로 활약 중이다. 도니는 퀴즈쇼에서 타온 상금을 부모에게 모두 뺏겼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약간 강탈하더라도 괜찮다는 위험한 결론에 다다른다. 클로디아는 아버지가 자신을 창녀 취급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남자들에게 내던지다시피 하며 마약으로 상처를 달랜다. 아버지들의 경멸 어린 평가와 예언을 자기실현하듯이 살아가던 자식들은,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불현듯 깨닫는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원망하며 살았지만, 사실 그 결과를 초래하도록 선택한 것에는 자기자신의 몫도 적지 않았다. 자신 역시 흠결 많고 위선과 기만과 죄악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른이 되었음을 각성하는 순간, 아이들은 오열하고 하늘에선 개구리 비가 내린다. 사람은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몰아가던 과거를 용서하고 극복하는 게 가능한가? 각성 이후의 변화는 진정으로 가능한가?

이 영화에서 감정이 가장 고조에 달하는 장면에 삽입된

에이미 만의 노래 〈Wise up〉의 가사는 비관적인 동시에 또 희망적이기도 하다. 끝장났다는 걸 인정해야만, 떠나보내야만 종결지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고, 그런 포기 이후에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걸 노래한다. 산 페르난도 벨리의 주인공들도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운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했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지 / 당신은 당신이 원했던 걸 얻었지만 / 이제는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있어 / 이제 당신도 알 거야 / 끝나지 않는다는 걸 / 당신이 정말 현명해지기 전까지 / 그건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하계방학 기간 본소에서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이 병 철

동국대학교 법학과

연수활동을 오기 전부터 상속이나 이혼과 관련한 가족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알고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상담소에 와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상담소에 와서 전화상담연수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혼이나 상속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법률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에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담자가 하나의 질문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실습 활동 중 직장인을 위한 월요일 야간상담 참관과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야간상담을 참관할 때, 내담자들의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을 하는 변호사님의 모습을 보고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봉사를 하는 변호사님의 모습을 보며 나도 꼭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훗날 법조인이 된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에 지원하고 싶다. 직접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이 재판 받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채권자 파악하

기가 매우 어려웠고 막막했다. 하지만, 선생님께 여쭙보고 계속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었고 채권자를 파악하니 막힘없이 신청서를 쓸 수 있었다. 신청서를 다 쓰고 내담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법을 통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큰일인지, 또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에 대해서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조 예 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현장실습을 신청한 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1년여 자원봉사를 하며, 상담 참관이나 서류 작성 등 조금 더 실무적인 업무를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습을 통해 특히나 상담을 참관하고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봉사할 때는 할 수 없었던 법률구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다. 사이버상담 연수에서 상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가정법률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와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상식” 책자로 가족법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에 대한 논문과 조사보고서 등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양육비관련 전화상담 연수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소송구조 신청을 위해 내소한 내담자의 본인진술서의 작성을 돕기 위해 직접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내담자가 나

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던 것이 매우 기뻛고, 내담자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진술서를 잘 작성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자원봉사와 현장실습을 했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처음 상담소의 봉사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1달 동안의 현장실습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정말 많기에 휴학을 하고 전공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은 계속하고 싶다. 자원봉사뿐 아니라 연수를 통해 많은 배움과 실천이 있었기에 다시 봉사활동을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도 된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김 민 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가족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실습 중 잘못하거나 실수할까 걱정되었다. 처음으로 전화상담 연수를 할 때는 긴장되었고 간단한 문의에도 불구하고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다소 힘들었다. 하지만 매일 전화상담 연수를 통해서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익힐 수 있었고, 가정법률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와 ‘가족법상식’ 책으로 가족법을 공부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보다 많아졌다.

법률구조연수 중 사이버상담 답변 작성, 실종신고심판청구서 및 파산·면책 신청서 등 소송구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그 밖에도 도서부와 교육부 업무를 하면서 가정폭력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조하고, 가정폭력 관련 도서 번역 및 가사사건 판례 스크랩 작업을 하며 관련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주는 일이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바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성장해나가는 법학 전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훗날 타인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 서 연

동국대학교 법학과

연수에 오기 전에 학교 선배님들을 통해 가족법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갈 수 있다고 들어서 많이 기대하며 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를 공부하고, 전화상담연수를 통해 이혼, 상속,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안과 이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장상담실에서 상담 참관을 하고 글을 쓰기 어려워하시는 내담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상속분할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혼소장 작성을 도와드리면서, 각 소송의 서류 양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 토론회”에 참가하여 찬성측, 반대측의 체계적인 근거들로 이루어진 주장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질문 시간을 통해서 미혼모의 입장과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통해, 미혼모와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이들의 양육 문제, 건강보험 문제 및 미혼모와 그의 아이들에 대한 타인의 편견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산면책신청서를 작성 연수를 통해 파산 서류에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사건의 경위와 채권 채무 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성 시 혹여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까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여 매우 의미 있는 기억으로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치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을 번역하면서, 이 치료 프로그램에 불신을 갖고 타인에 의해 억지로 참여한 자는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가 미미하며,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중도포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에 필요한 입증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방학동안 이러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상담소의 소장님과 여러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 사회에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담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논문이나 외국 학술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업무를 통해서는 법률이 지닌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상담참관을 통해 내담자의 법률적 문제를 진심으로 귀담아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현장실습을 하면서 직접 부딪친 현실은 생각보다 참혹하였습니다. 교과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 법의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의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소중하고 값진 경험들은 더 나은 법학도로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훗날 어떠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깊이 감사합니다.

왕 도 경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한 달 동안 예정되어 있던 현장실습을 끝마쳤습니다. 처음 현장실습 대표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학교를 벗어나 실무에 뛰어들다는 사실에 걱정되는 한편,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넘어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렘이었습니다.

현장실습기간동안 가정법률상담사례집인 ‘어떻게 할까요’를 정독하면서 가족법에 대해서 다시 학습하였습니다. 이는 전화상담연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연수 중 특히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사이버상담 연수하면서 가족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민법상 실무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변화하고자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에서 법률상담 외에도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실 업무를 통해 가정상담 월간지를 정리하면

최 예 진

동국대학교 법학과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가사사건과 관련된 법 지식을 습득하는 데 흥미를 느꼈고 조금 더 실무적인 일을 배우고 싶어서 현장실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실습에 오던 날은 오랜만에 상담소에 다시 오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직 가족법을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나 필요한 서류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게 되었기에 봉사활동 경험을 떠올려서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약 4주 동안 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선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위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정 내에서는 여성이 약자의 위치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태영 박사님이 건립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존재가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에게는 전화 주신 내담자가 여러 사람 중 한 명일지 몰라도 상대방은 절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집에 돌아간 후에도 ‘어떻게 할까요’ 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법을 수강할 때 더 관심을 두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 중 하나는 야간상담을 참관한 것입니다. 상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내담자는 본인이 처한 힘든 상황을 매우 오랫동안 천천히 반복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담이 길게 진행될수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내담자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을 보며 변호사의 참다운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검사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직접 상담 기관들을 찾아본 후 적극적으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검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 동안 실습하면서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 동기들과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기에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심 분야가 같은 좋은 동료들을 사귀는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상담이 끝난 후 여러 질문에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모든 상담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은 법조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뜻깊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법조인이 되어서 꼭 다시 한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만나세요~~



상담대표 전화 1644-7077

전송 02)780-0485

e-mail webmaster@lawhome.or.kr

홈페이지(화상상담) <http://www.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egalaidcente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 신임이사 및 유임 감사 임기 시작

지난 2월 24일 본소의 정기전기이사회에서 선출되어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박영립, 김상용 두 신임이사 와 한미영, 최문원 두 유임 감사의 임기가 9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박영립 신임이사는 법무법인 최앤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변협 인권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한센 인권변호단 단장,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고문 등을 역임했다. 1989년 백인변호사단에 가입한 이래 소송구조와 야간상담 그리고 법률 자문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김상용 신임이사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무부 상속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TF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친족상속법」, 「가족법연구」, 「주식 친족상속법」 등을 집필하였다. 가족법개정운동 초기부터 본소와 활동을 같이 했던 고 김주수 박사의 자제로 본소와는 2000년

부터 호주제를 비롯한 주요한 가족법개정운동 이슈에 이론적 기초를 지원해왔다. 2012년부터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9월 27일까지이며, 유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9월 27일까지이다.

본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금융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9월 23일 본소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채 해결 및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적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파산) 및 가사사건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협업, 가계부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협업,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 개발, 저소득 금융 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및 사회경제적·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 금융문제와 가정문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정은정 운영총괄팀장, 하정민 과장, 윤경희 상담관과 본소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전규선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상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와 이로 인한 가정문제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 계층들을 위해 보다 신속한 채무조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법률구조의 활성화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사진 2면)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본소에서는 9월 17일 ‘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법교육’의 일환으로 관악구청에서 열린 2022관악다문화 축제에 담당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축제에서 본소는 많은 시민과 함께 ‘법교육 및 무료법률상담, 각종 게임활동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관악다문화 축제’에는 베트남, 중국, 일본, 몽골, 호주 등 외국 국적의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일반 내국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도 행사에 많이 참여하였다. 본소에서는 영어 및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된 상담소 소개 브로슈어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하며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또한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한 서명과 법률상담을 비롯해 법률퀴즈, 에코백 그림 그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하였다. 특히 아이들의 에코백에 ‘가족 그리기’ 체험이 인기가 많았다. 이날 행사에는 관악경찰서,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아시아 연구소, 관악구 가족센터 등 관악구의 다양한 센터 및 사회단체가 참석하여 이들과 함께 더 효과적인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관련사진 2면)

본소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비대면) 실시

본소에서는 9월 13일 ~9월 2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규정에 의하면 이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관련법, 아동학대유형과

의심징후,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보호절차, 아동학대신고의 무자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학대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본소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재확인 하였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9월 22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의심, 조현병’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어떤 정신질환들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치료하고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하였다. 강사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치료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으로 쉽게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11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9.7. 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
- 천다라 상담위원

9.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단 상담원
가족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9.21. 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9월 6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학원 리갈클리닉Ⅱ 수업에서 '가족법 개요'를 주제로 강의
하였고, 20일 동 수업에서 상담참관 및 상담보고서 작성 등
에 관해 강의하였다. 14일 서울가정법원 이혼 사건 조정을
하였고, 당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가족법학회 한

2022년 9월 상담통계

총 건수 5,307

법률상담 (4,523)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883	3,535	103	1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41	34	109

• 인터넷 정보 이용 52,650 건

2022년 9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
한 총 상담건수는 5,307건이었다.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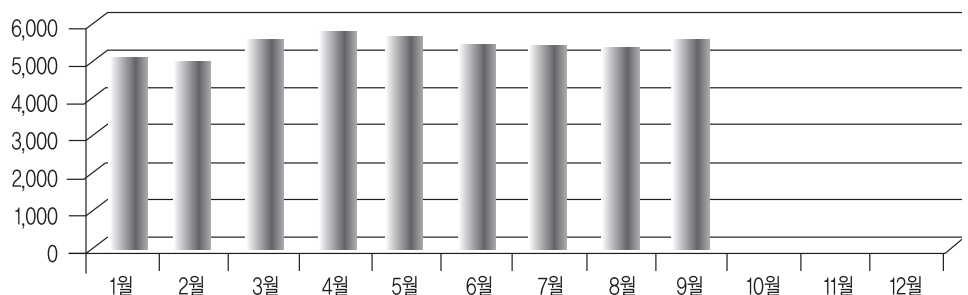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523건
(85.2%), 화해조정 641건(12.1%), 소
장 등 서류작성 34건(0.6%), 소송구조
109건(2.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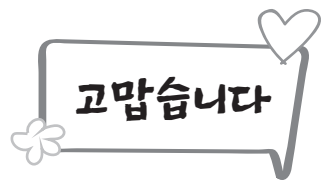
법률상담 4,523건을 사건내용별
로 살펴보면, 2022년 8월에 비해 가
사사건은 부양(1.9%→2.2%), 친
양자(0.5%→0.8%), 개명(0.6%→
0.8%), 성변경(0.9%→1.3%), 가
사절차(5.7%→10.5%), 가사기타
(6.4%→14.8%)에 관한 상담이 증
가하였다. 민사사건은 채권·채무

(0.4%→0.5%), 파산(1.9%→2.3%),
개인회생(0.3%→0.6%), 민사기
타(0.5%→2.2%), 형사사건은 성
폭력(0.0%→0.1%), 형사기타
(0.4%→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
다.

법률상담 4,52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
펴보면, 면접상담 883건(19.5%), 전화
상담 3,535건(78.2%), 인터넷상담 103
건(2.3%), 순회상담 1건(0.0%), 지상상
담 1건(0.0%)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일가족법연구회 등 공동주최 오오무라 아츠시(大村敦志) 가쿠슈인대 교수 초청강연회(주제: 일본의 최근 가족법개정)에 참석하였다. 20일 본소 8층에서 조은경·전규선 상담위원과 함께 경기도 GH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지원센터 정근희 팀장 및 최홍석 과장 등과 업무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3일에는 본소 8층에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상담센터와 '금융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다. 27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가족변화 대응 부양제도 정비 방향 및 과제' 전문가·연구진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1일, 15일 및 22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서 이혼사건등을 조정하였다. 9월 2일에는 서울경찰청의 서울 각 경찰서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교육(II)에서 "가정폭력처벌법과 주요 판례"를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하였다. 7일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조정위원연수회에 참석하였다. 20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갈 클리닉(II) 수강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법 적용 실제"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곽배희 소장, 이희호 여사 추모 행사 참석

본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9월 21일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희호 선생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이 추모 행사는 올해 탄신 100주년을 맞은 이희호 선생의 삶과 업적을 돌아보기 위해 '시대를 이끈 여성·인권 운동가 이희호'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022년 9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권영덕,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이승주, 천정환 변호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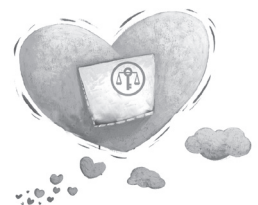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강정하, 권수민, 김가연, 김나연, 김다솔, 김민제, 김상은, 김서형, 김선옥, 김성현, 김세연, 김수지, 김승현, 김 원, 김이훈, 김지민, 김지오, 김진효, 김채연, 김태은, 김하은, 도희원, 문송지, 민정원, 민지용, 박세현, 박수민, 박인아, 박재우, 박준석, 박태희, 박효영, 배호진, 백정은, 신동은, 신수민, 왕도경, 원지수, 이세진, 이예원 1, 이예원 2, 이은세, 이종원, 이진우, 임가현, 장아현, 전재식, 정재원, 정희재, 조유진, 조윤정, 채다은, 천소연, 최건희, 최신양, 최유진, 최준영, 하유지, 한경희, 허경호, 허인서, 허정수, 홍윤아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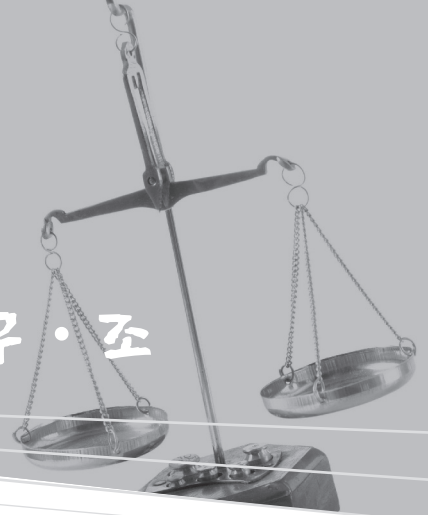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과거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친자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법률구조 2021-1-229

담당: 신창주 변호사

사건명: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70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자녀인 피고(남, 40대)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1970년대 후반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동거하며 피고와 함께 생활하였지만,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진 사실이 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동거 기간 중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2021년 4월경 원고는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피고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고는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2. 7. 2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코로나19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4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0대)은 2017년경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친모가 생계비가 부족하다며 신청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마땅히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에 대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친모는 화장품 사업을 해야겠다며 신청인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자식된 도리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주었다. 이후 친모는 신청인 명의로 화장품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횡령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로 인해 친모가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는 폐업을 하였고, 신청인은 빚만 떠안게 되었다.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변제를 할 수 없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한 회사는 신청인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결국 퇴사를 한 신청인은 취업을 위해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곧이어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매우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

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9.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1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oo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IMF 외환위기로 인해 퇴직 후 동료들과 함께 통신공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0년경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 또한 개인택시조합과 연대하여 택시용 TRS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사업에 매진하던 중 2002년경에는 KT협력업체로 지정되면서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해 신용대출을 받았다. 매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2~3년간 회사가 잘 운용되었다. 그러나 통신공사 시장이 점차 줄어들면서 적자로 전환되었고, 신청인은 신규 사업을 모색하였다. 신청인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통신공사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 및 세금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징수되어 결국 폐업하였다. 이후 새로운 사업이라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이마저도 폐업에 이르렀다. 현재 신청인은 고령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구직이 어려우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7. 7.)

채무자를 면책한다.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반환받고 잠적한
남편과의 이혼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2-1-76

담당 : 황민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70대)와 1964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외도하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원고는 자녀 양육을 위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불성실하게 생활했다. 또한,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이혼을 강요하였다. 피고는 2020년 9월경 함께 거주하던 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채권 중 상당 금액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거주지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고, 손녀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2. 7.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연락 두절로 장기 별거 상태인
일본인 남편과의 이혼판결**

법률구조 2022-1-107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는 피고(남, 연령 미상)와 1990년경 일본에서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피고와 15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아 귀국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가 원고의 비자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 되면서 원고는 장기별거 상태로 홀로 생

활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년경 발병한 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 중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고는 임대 주택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의 혼인 관계로 인해 임대 주택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8.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감치 결정**

법률구조 2022-1-185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남, 30대)과 피신청인(여, 30대)은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년 7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양육비 지급을 끊더라도 신청인은 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여 2021. 7. 8.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8호협00협의이혼확인신청사건의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0개월간 매월 말일에 800,000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행명령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에 따른 감치신청을 하여 2022. 5. 25. 피신청인은 7일의 감치 처분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2022. 8. 16.)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7년 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2-1-257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0대)와 채무자(남, 40대)는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며, 2017년 9월 이혼소송을 통해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고, 채무자는 2015.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4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2017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2019년 이행명령신청, 2021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의 금융조회를 통해 2021년 2회에 걸쳐 630만 원 정도의 미지급양육비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미지급된 양육비가 27,673,280원에 달하여 양육비지급이행을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2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1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0월 24일, 11월 14일, 11월 28일)
- ▶ 강사 : 김명준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11월 3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4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교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10월 12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월 9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7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3년 3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

|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장

정미화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주제발표

김상용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발표

신옥주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영실 원장 (애란원)

오영나 대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박성민 변호사 (HnL 법률사무소)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보호출산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이란 임신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신부와 아동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 편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아동 유기를 쉽게 하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비혼모와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 이러한 보호출산제 도입 여부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